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109호 2015. 11. 06(금)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5-1310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남원시 공고 제2015-1246호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2차) 공고..... 20
- 남원시 공고 제2015-1322호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28
- 남원시 공고 제2015-1331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30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공고 제2015-1310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부분과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항)
- 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항 개정(안 제9조제7항)
- 다.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 라.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개정(안 제12조)
- 마.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전 조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 ~ 2015. 11. (20일간)

- 결 과: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의뢰 중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1. 개정이유

○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부분과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항)
- 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항 개정(안 제9조제7항)
- 다.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 라.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개정(안 제12조)
- 마.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전 조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재정법」
- 나. 그 밖의사항
 - 1) 입법예고
 - 기간: 2015. 10. . ~ 2015. 11. (20일간)
 - 결과:
-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의뢰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바탕으로 한”을 “바탕으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3호 중 “해외봉사활동”을 “국외봉사활동”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를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권장을 위하여 남원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주요사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3항 중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 등 기타”를 “운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활동 등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 제목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 지역”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하고자 하는”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으려는”으로, “체결하여 위탁하며”를 “체결하며”로, “위탁계약기간을”을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을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같은 항 단서 중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를 “센터를 법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제8항 중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로 한다.

제10조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경비를”을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을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수입·지출결산서”로, “회계년”을 “회계연”으로,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을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제4항 중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를 “자원봉사활동에”로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을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을 “센터는 센터등록”으로, “시장에”를 각각 “시장에게”로, “의해 등록된 단체”를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시장은 센터”로, “대해 자원봉사센터에”를 “대해서 센터에”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

제1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 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에 따라----- ----- 바탕으로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1. "자원봉사활동"이란 ----- ----- ----- ----- -----.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 ----- 하거나 ----- -----. 4. "자원봉사센터"란 ----- ----- ----- ----- 따라 -----</p>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레
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2. (생략)
-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14.·15.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남원시
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
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
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
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
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
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
의·의결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1. ~ 12. (현행과 같음)
- 13. ----- 국외봉사활동
- 14.·15.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

----- 마련-----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 -----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권장
을 위하여 남원시 -----

②-----

1.·2. (현행과 같음)

3. -----
--- 주요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그 밖
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
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시
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
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
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 그 밖에 -----
-----.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
·활동 등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
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
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 또는 비영
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
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
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 6. (생략)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
-----.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

----- 경우에는 -----
-----.

② ----- 위탁할 경우 위탁받으려는 -----

----- 체결하며-----
-----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
-----.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

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④ ----- 센터장 1명 -----

⑤ 센터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

제10조(센터의 지원) ----- 센터 -----

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 따른 -----
----- 회계연도-----
----- 해당 회계연도 개
시 1개월 -----
-. ----- 변경하는 경우에도
-----.

② -----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
-----.

③ ----- 수입
· 지출결산서 -----
----- 회계연-----
----- 공개하
여야 한다.

제11조의2(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 있으며, 자원봉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생략)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 5. (생략)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원봉사활동에 -----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

----- 다음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 -----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
-----.

제17조(보험가입) ① ----- 센터

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

-----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된 -----

② 제1항에 따라 -----
----- 경우 -----

1. 센터는 센터등록 -----

----- 시장에
게 -----

----- 따라 등
록된 자원봉사단체 -----

----- 시장에게 -----
----- 신청 -----

2. 시장은 센터 -----

----- 대해서 -----
----- 지원 -----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
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
을 체결

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
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③ 그 밖에 -----
-----.

제18조(실비 지급) -----
----- 자원봉사자에게 자원
봉사활동-----
-----.

제19조(시행규칙) ----- 시행에 -

--.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5-1246호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2차) 공고

남원시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토지

매각재산의 표시					단가 (원/㎡)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금액)	비고
소재지	지번	블럭 획지번호	지목(용도)	면적 (㎡)			
신정동	900	A-3	대 지 (일반상업지역)	603.9	416,000	251,222,400	

2. 매각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시작일시 : 2015. 11. 20(금) 10:00

나. 마감일시 : 2015. 12. 3(목) 16:00

다. 개찰일시 : 2015. 12. 4(금) 10:00

라. 개찰장소 : 남원시도시과 입찰집행관 PC

마. 계약기간 및 장소 : 2015. 12. 4 ~ 12. 14(11일), 남원시청 도시과

※ 공고기간 : '15. 11. 6 ~ 11. 19

4. 입찰의 참가자격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등록 후 지정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자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온비드 <http://www.onbid.co.kr>)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과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 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서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입찰연기 및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온비드" 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찰

가.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지정한 납부방법외 다른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2번이상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미달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바.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하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사.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의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및 환불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납부여부는 "온비드" 에서 직접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로는 『신한위탁』 또는 『하나위탁』 또는 『우리위탁』이며,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니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분할납부 불가)을 일시 입금하여야 하며,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할 경우에는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인 금액이나, 분할 입금할 경우에는 입금처리가 안됨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며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납부여부는 "온비드" 에서 직접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납원시 입금계좌로 이체됨)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자동결정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 를 통해 게시되오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체결

○ 낙찰 후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은 입찰보증금에서 대체되며 낙찰일로부터 11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의 명의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남원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 계약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지역개발부서(3층)

나.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 매각대금의 납부는 **일시납 또는 6개월 분납**의 방법으로 합니다.

구 분		납부방법	비 고
일 시 납		계약체결시 매각대금 완납	
6개월 분납	계약금(10%)	입찰보증금(10%)으로 대체	
	중도금(40%)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잔 금(50%)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잔여대금(중도금 및 잔금)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연일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남원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율을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기일인 6개월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다. 해당 계약 대상 토지를 담보로 일부 금융권에서 체비지 분양대출에 관한 사항은 금융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의 해지는 물론 계약보증금은 남원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 전매양도·저당권·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개 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법 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의 경 우	개인	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신분증
	법인	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분증

12. 계약해지

- 가. 납기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금완납을 하지 않을 경우
- 나. 매수자가 부실증빙서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 다. 매수자가 잔금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마.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당해 체비지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매수자가 사용한 경우

※ 계약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남원시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됨.

13.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

- 가. 소유권 이전은 환지확정처분 후 매수자가 토지대금완납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 기타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정산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대상인 토지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 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절차와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다. 본 매매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토지로서 환지확정처분 과정에서 토지의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시와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라.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장의 사용승낙을 득한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 본 토지매입 후에는 매수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및 건축행위 등 제반내용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14. 명의변경

○ 체비지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한 경우 남원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나.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다.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매수자 매매계약서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매매계약은 현황 면적에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하며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해당재산의 현장답사,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 등의 일반 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매각재산 내 모든 시설물이나 공작물은 매수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행정상의 제반규제 또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개경쟁입찰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제외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규칙)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입찰시 유의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 준수규칙,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남원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한 내용 중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과 같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시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1588-5321)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도시과 지역개발 담당자(박상현,☎063-620-64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 11. 6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5 - 1322호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1. 남원시 고시 제2012-25호(2012.4.27)로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남원시 고시 제2013-35호(2013.5.16)로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남원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의 명칭 :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일원(남원역 앞)
3. 면 적 : 22,505.2㎡ (수용지구 9,151.4㎡, 환지지구 13,353.8㎡)
4. 시 행 자 : 남원시장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2. 4. 27) ~ 2015. 11. 06
6. 사업비 정산내용
 - 1) 세입현황

구 분	면 적(㎡)	금 액(천원)	비 율(%)	비 고
계	4,775.6	1,818,243	100	20필지
체비지	3,780.5	1,439,684	80	8필지
환지 과도면적 청산수입	995.1	378,559	20	12필지

2) 세출내역

구 분	금 액(천원)	비 율(%)	비 고
합 계	1,818,243	100	
직 접 비	1,615,400	89	용지비, 조성비
일반관리비	56,000	3	직접비의 3.5%
간 접 비	48,600	3	단지조성비의 3.1%
기 타	98,243	5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6번 참조

나. 기타사항

1. 종전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환지처분 내역과 같이 확정 되었으며, 확정지번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의 각종 공부발급은 다소 기일이 소요됨.
2.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발생된 과·부족 토지의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 당시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징수, 교부 정산 (6개월 이내)하여야 하며, 과도환지 및 체비지는 청산금이 완납되어야 환지촉탁등기 및 체비지 소유권 이전 등기됨 (체비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내역을 개별 통지함에 있어 미수령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11. 06

남 원 시 장

남원시공고 제2015-1331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되어 남원시가 권장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이운태(전화 : 620-57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1. 폐지이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되어 남원시가 권장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1. 5. ~ 2015. 11. 25.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